

2024년도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모집 공고

우리 시에서는 「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·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년 9월 26일

아 산 시 장

1. 위촉분야 및 인원

구 분	위촉분야	위촉예정인원	위촉기간	비 고
공개모집	시민 옴부즈만	1명	2년 (1회 연임 가능)	

2. 주요업무

- 가. 신청인의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
- 나. 스스로의 발의에 따른 집단민원 중재·조정 및 감사청구
- 다.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
- 라.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
- 마. 권고,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
- 바.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·중재

3. 위촉 신분 및 근무 활동

- 가. 신 분 : 위촉직(비공무원)으로서 옴부즈만 활동 수행
- 나. 근무방법 : 주 3일 근무
- 다. 활동수당 : 5급(15호봉) 공무원 연봉의 50% 상당 지급(근무일수 산정 지급)

4. 지원자격

가. 지원자격

- 1)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2)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3)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4)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 - 5)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
 - 6) 법원,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권리관계 등의 조정, 중재, 권고 등의 업무를 2년 이상 전문적으로 하거나 했던 사람
- ※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「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적용

*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

제2조(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) 「헌법재판소법」 제19조제4항제5호의 "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
3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
4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라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

나. 옴부즈만의 결격사유

- 1) 최근 2년간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 (모집공고문 게시일 기준)
- 2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*** 지방공무원법**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다. 겸직금지

- 1)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정당과 관련된 직위
- 2) 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원

5. 전형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 : 자격요건 심사

※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지

나. 2차 면접심사 : 적격요건 심사

※ 시민 옴부즈만으로서의 기본자세, 옴부즈만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, 전문성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업무추진 역량에 대한 심사

다. 의회 동의 대상자 선정 : 대상자 선정 후 개별통지

라. 의회 동의 : 아산시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시민 옴부즈만으로 위촉됨

마. 최종 발표 :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

6. 지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4. 10. 7.(월) ~ 10. 10.(목) 평일 09:00 ~ 18:00

나. 접수장소 : 아산시청 2층 시민옴부즈만 사무실 (점심시간 12시~13시)
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 (대리접수 가능)

※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의 접수 불가

라. 제출서류

1) 지원신청서 1부

2)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

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4)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
5) 비당원확인서 1부

6) 그 밖에 시민 옴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7. 유의사항

가.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, 결격사유, 겸직금지 사항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
나.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

다.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

라.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마.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지함

바.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「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며,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산시의 해석에 따름

사. 기타 사항은 아산시 감사위원회(041-540-2243)로 문의